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2월 28일

- 회부일자 : 2000년 2월 29일

3. 제안이유

'99. 6. 26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과징금 처분대상(안 제4조)

-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→ 당 초 :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

→ 변 경 :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로 개정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·유지와 관련된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 제4조 과징금 처분대상의 인용조문과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